

제38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2월23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46)
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60)
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24)
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27)
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62)
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49)
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5)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72)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24)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74)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0)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67)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46)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45)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12)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49)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50)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8)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70)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7)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70)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8)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80)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79)
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55)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62)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64)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56)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51)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3)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78)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17)
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63)

3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80)
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64)
3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83)
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36)
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4)
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97)
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73)
4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00)
4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87)
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40)
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018)
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97)
4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65)
4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46)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87)
4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64)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58)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54)
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79)
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8)
5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64)
5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77)
5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68)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73)
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61)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76)
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00)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6)
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5)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8)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83)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88)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14)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02)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2)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7)
7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64)
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22)
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13)
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9)
7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1)
7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6)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20)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54)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21)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6)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5)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2)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1)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29)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5)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53)
8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6)
8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2)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2)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7)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02)
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31)
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4)
93.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9)
9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02)
95.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6)
9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45)

상정된 안건

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46) 6
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60) 6
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4) 6
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7) 6
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2) 6
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9) 6
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5) 6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72) 6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4) 6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4) 6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0) 6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7) 6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6) 6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45) 6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2) 6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49) 6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0) 6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8) 6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70) 6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7) 6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0) 6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8) 6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0) 6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79)	6
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55)	6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62)	6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64)	6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6)	6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1)	6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3)	6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8)	6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7)	6
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3)	6
3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0)	6
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4)	6
3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3)	6
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36)	6
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4)	6
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97)	6
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3)	6
4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0)	6
4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87)	7
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40)	7
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8)	7
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97) ...	7
4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5)	7
4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6)	7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87)	7
4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4)	7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8)	7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54)	7
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79)	7
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8) ...	7
5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4)	7
5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77)	7
5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68)	7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73)	7
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1)	7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6)	7
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0)	7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6)	7
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5)	7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8)	7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3)	7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88)	7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4)	7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2)	7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2)	7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7)	7
7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4)	7
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2)	7
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3)	7
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9)	7
7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1)	7
7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6)	7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0)	7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54)	7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1)	7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6)	7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5)	7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2)	8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1)	8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9)	8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5)	8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3)	8
8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06)	8
8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2)	8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2)	8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7)	8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2)	8
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1)	8
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4)	8
93.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9)	8
9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2)	8
95.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6)	8
9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5)	8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안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주 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서 직위

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회의이므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마이크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말씀을 하시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46)
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60)
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4)
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7)
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2)
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9)
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5)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72)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4)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4)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0)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7)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6)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45)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2)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49)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0)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8)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70)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7)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0)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8)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0)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79)
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55)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62)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64)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6)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1)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3)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8)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7)
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3)
3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0)
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4)
3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3)
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36)
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4)
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97)
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3)
4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

- 표발의)(의안번호 2102400)
4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87)
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40)
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8)
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97)
4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5)
4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6)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87)
4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4)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8)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54)
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79)
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8)
5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4)
5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77)
5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68)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73)
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1)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6)
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0)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6)
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5)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8)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3)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88)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4)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2)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2)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7)
7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4)
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2)
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3)
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9)
7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1)
7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6)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0)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54)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1)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6)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5)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2)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1)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9)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5)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3)

8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06)

8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2)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2)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7)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2)

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1)

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4)

93.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9)

9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2)

95.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6)

9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5)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6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권 1페이지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재직자에 대한 채당금 지급, 채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6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자료 3페이지 재직

자에 대한 채당금 지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채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의 보호 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재직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니므로 채당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임채기금의 수지가 현재 1247억 정도 손실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재직자 채당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현재 법 개정을 반영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채당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당금의 지급 현황과 임채기금의 현황은 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은 최근 체불의 해소를 위해서는 재직자에 대한 채당금 확대하는 개정안 취지대로 이렇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임금채권보장법 관련해서는 건건이 하지 말고요 일괄해서 다 보고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부 측 의견 듣고 또 그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지요.

○임이자 위원 잠깐만.

행정실에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법전을 하나씩 나눠 주세요.

○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면 자료 29페이지부터, 다시 두 번째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당금 지급 절차의 간소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체불 임금 등 사업주의 확인서 발급으로 소액채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채당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평균 7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에 체불 근로자의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가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대체할 만큼의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 검

토가 필요하고 절차 간소화의 범위를 윤준병 의원님께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한해서 간소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7페이지 체당금 지급 사유를 추가하는 항목입니다. 이 내용은 한정에 의원안과 박광온 의원안이 각각 있는데 먼저 한정에 의원님 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휴업·경영상의 어려움 등에도 일반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지급 요건이 파산, 도산 및 그에 준하는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0페이지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3페이지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변제금 회수 관련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세부항목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하는 항목 그리고 납기 전 징수제도 등을 도입하는 사항, 세 번째 항목으로 사업양수인의 2차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있는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 4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체납처분 절차는 민사절차에 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 되므로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입법례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이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 심의 시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5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준용과 연계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를 함께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보험료징수법에 없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해서 체당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채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사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채권의 압류절차가 아닌 국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이와 같이 압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57페이지의 내용은 변제금의 납부책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과 같이 변제금의 납부책임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양수인, 법인의 실질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준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더 확대된 내용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1페이지, 체당금 지급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 제7조 3항의 내용으로 같은 종류의 체당금 사이에 중복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당금을 먼저 청구하는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의 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이 공통적인 사항이고 자료 6페이지 부분에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총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6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당금 용어 변경하는 사항은 윤준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임채법상의 체당금을 ‘채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이 쉽게 읽고 법령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9페이지, 장철민 의원안으로 변제금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의 정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 대위행사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임금으로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71페이지, 부과금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 소액체당금 지급이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대해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필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부과금 징수 대상이나 징수 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3페이지,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를 추가하고 근로감독관의 자체청산 지도 단계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앞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체청산 지도 단계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부분은 법 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대해서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5페이지, 그 밖의 개정사항 5번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체당금의 부정수급 시에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5배까지로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항목은 부정수급 관련 죄를 범한 자에게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 형사법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진신고에 관해서는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8페이지, 정부안 제23조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변제금 징수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밖의 개정사항 제7번 항목 83페이지, 현장조사의 주체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체당금 지급과 회수에 있어서 그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5페이지, 그 밖의 개정사항 부담금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 연장 부분입니다.

부담금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현재 3년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징수·반환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7페이지, 재산목록 제출명령에 대한 거부 시에 제재수단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현행의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현행 과태료 조항의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목록 미제출과 거짓제출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것은 처벌 사례가 없거나 부과된다 하더라도 경미한 법 위반행위로 낮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취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체당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자료로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하는 경우에 당초 법에서 형벌을 부과한 이유가 체당금 지급을 위한 요건 확인,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과태료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의 형벌 수준보다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현행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

로 상향하게 되면 다른 위반행위, 조사·질문을 거부하는 경우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준이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은 법률용어 정비 사항으로 91페이지 부분은 국회의장 의견제시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을 공인노무사의 지원 비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부칙사항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안호영 예.

○임이자 위원 91페이지의 법률용어 정비 관련 돼 가지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선영 91페이지 내용은 친구조문 대비표 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현재는 제7조 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 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 비용의 지급’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법제실과 국립국어원의 협의로 416개의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했고 우리 위원회의 33개의 법률에 대한 정비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지금 전문위원 설명은 92쪽에 19조 2호의 ‘조력 비용 지원’을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비했다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예.

○소위원장 안호영 앞부분에 좀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조문까지 안 찾아봤을 텐데 그러네요. 그것만 바뀐 겁니까?

○전문위원 최선영 예, 그 부분만 수정되었습니다, 법률 조문.

○소위원장 안호영 임이자 위원님, 됐습니까?

○임이자 위원 (고개를 끄덕임)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우리 정부 측 천천히 그 부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3페이지 재직자 해당금은 저희들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변제금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국세채납처분 절차의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임금

채권보장기금의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3페이지 말미에 있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급여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재직자에 대한 해당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 이의 없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그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다음 29페이지 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부분은 확인서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체불 금품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하더라도 대부분 체불확인서 내용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 비율이 99.3%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체불확인서 발급만으로 해서 절차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은 그렇게 설명했다치고 여기 정부안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 안도 같이 함께 심사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문별로 들어가서, 정부안이 있고 그다음에는 다른 노동계 의원님 안도 있고 이수진 의원님 안도 즉 있으니까 조문별로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즉 조문 조문……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조문별로 해서, 개정안으로 즉 들어왔잖아요.

○임이자 위원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조문별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렇게 우리가 전문위원 의견하고 정부 의견이 다른 건지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도 토론할 때 참고하니까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면 이 부분 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부분부터…

○임이자 위원 아니 아니요, 앞부분부터.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앞부분부터요? 재직자 해당금 부분이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앞부분은 아까 설명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이 재직자에 대한 체

당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재직자에 대해서 해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동의한다, 이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정부안으로 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 내신 부분 출산전후휴가기간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부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정부안이 뭐냐고요, 정부안이. 정부안 내용이 뭐냐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시라고.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 안까지 비교표가 뒤에 18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서, 먼저 정부안의 내용 자체는 6페이지와 7페이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해당금의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전문위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준국장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시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8쪽에 보시면 왼쪽에 현행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7조로 되어 있는데 7조 1항에 보시면 여기 밑줄을 그어 놨는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 규정은요. 그러니까 현행은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소액채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 7조를 그대로 두고 7조의2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6쪽에 보시면 7조의2 항목으로, 다른 의원님들은 대개 7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거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해당금이 기본원칙이고 재직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7조의2의 형태로 지금 도입

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조의2에 재직 근로자의 해당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금의 범위는 1호·2호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1호는 뭐냐 하면 7조 1항 4호가 기존의 소액채당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7조 1항의 1호부터 3호까지가 일반 해당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호에 있는 내용 플러스에다가 2호를 추가로 한 게 임금이랑 휴업수당만 되어 있는 거고 일반 해당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이 되지만, 그리고 기존에 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도 되지만 재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금 빼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5항에 보시면 같은 근무기간 또는 휴업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는 재직 근로자가 예를 들면 재직된 상태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 그때마다 이것을 다 재직자 해당금을 지급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근무기간 또는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지난해 말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도 지금 임이자 위원님이 발의해서 추가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반영을 해서 저희 수정의견에는 그 출산전후휴가기간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는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소위원장 안호영** 설명이 다 된 겁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일단 재직자 해당금 도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7조의2로 해서……

○**소위원장 안호영** 우선 복잡하니까 재직자 해당금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토론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에는 7조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 해당금에 대해서는 7조를 그대로 놔두고 재직자 해당금에 대해서는 7조의2를 새로 신설해서 거기에 지금 그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7조의2는 지금 21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실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생기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서 재직 중에 체당금을 여러 차례 받을 수가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재직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주가 또 체당금으로 체불을 해결하려고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재직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 등을 내실화해서 사업주가 조속하게 체불 청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김웅 위원님.

○김웅 위원 차관님, 지금 임금채권보장법 정부안 보니까 7조의2 제1항에 보면 사업주가 제7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4호까지는 있는데 지금 5호가 없는데 5호는 별도의 개정 조항에 다시 들어간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4호까지는 현행 규정에 있는 거고요. 4호가 소액체당금에 대한 거고 그리고 5호는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5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김웅 위원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 체당금이 아니고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 2항 1호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그리고 2호·3호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3개월 치를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게 기금 문제도 있고 이래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예, 퇴직 근로자에 대한 소액체당금도 3개월이고 일반 체

당금도 임금에 대해서는 3개월이고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최종 3년분에 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김웅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이 아니고 임금이니까 3개월로 간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예.

○임이자 위원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라는 게 신설돼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우리 사업주들이 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가 또 아니면 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그동안은 퇴직 근로자들에 한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3년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 더 확대시켜서 이제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도 해주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지요, 돈.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로 가는 게 맞는데 우선 먼저 생각해 보시자고.

지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그 기금을 누가 냅니까? 사용자가 부담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국가는 그 사무비용 정도만 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재직 중에 있는 자들이 신설되면서…… 휴업하고 뭐가 들어오지요? 휴직? 휴업·휴직이 새로 들어오는 건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임금하고 휴업수당 부분인 거지요.

7조의2 2항에 보시면 재직자 체당금의 범위는 1호가 3개월 동안의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고요. 2호는 같은 기간 동안에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휴업기간 또는 같은 근무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이게 다 들어오는 건데요. 휴업수당은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이것도 처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새로 들어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휴업수당은 기존의 소액체당금에서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우리가 대신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대위권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선 지금도 현행법 가지고 해도 1247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보통 얼마 정도 되지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수입이 연간 한 5000억 정도……

○임이자 위원 5000억 정도 들어오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50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립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한 7000억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대환 8300억.

○임이자 위원 8300억?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작년 말에 8300억……

○임이자 위원 8300억 정도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다, 자기네들이 물론 요율에 따라서 내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는 사람은 내고 또 계속 파산하고 또다시 회사 만들어 가지고 또 파산하고 막 이랬을 경우는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채권을 집행하려고 하면 받아들이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변제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담보권이 제일 먼저 실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조세·공과금이고 그다음이 임금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순위가 몇 순위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상권을 실행하려면? 4순위 정도 되나요? 1순위는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최우선변제에 들어가는 것은 최종 3월분의 임금하고 그다음에 3년 치의 퇴직금만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재직자는 지금 안 됩니다.

○임이자 위원 안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러니까 지금 최

우선변제 대상은 퇴직……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변제를 받을 확률이 거의 뭐……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재판에 가지고 그렇게 자산을 배분하기 전에 저희들이 국세채납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서 사전에 변제금 회수에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임이자 위원 무슨 절차에 따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이 국세채납처분 절차 뒤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임이자 위원 아까 그것 다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국세가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하자라고 그러는데 보험료징수법은 나름대로 사회보험료니까 타당한데 해당금은 민사관계에서 한 쪽을 대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변제하고 그것을 회수하겠다 하는 건데, 다만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가 기관이, 정부 기관이 민사관계에 개입해 가지고 일정한 금품을 지원하고 국세관련법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 관련 법률에서 응급의료비나 양육비 그런 사례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감안하셔서 저희들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취지는 동감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들하기가 좀 어렵다.

○김웅 위원 이게 보면 재직자 해당금이라는 게 저도 예전에 검찰에 있었을 때 사건 처리를 할 때 보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은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남의 돈이거든요. 기금은 남의 돈인데 남의 돈인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민법의 대원칙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우선 채권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든지 재직자한테 이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금 고갈의 우려가 있고 도덕적 해이가 당연히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돈을 확보를 하자라는 말도 있고 자연인에 대해서도 계속 책임을 묻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체계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황당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기금을 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의 영역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재직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에는 체당금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조항을 만들면 정부안처럼 7조의2를 만들어서 뒤로 빼고 이렇게 해서 형식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고민은 노동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도 여기에 대해서 이 기금의 문제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 이례적이고 기계적인 게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 중요한 법 중의 하나인데 대한민국의 다른 기본법과 이게 정합성에 맞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일단은 제3의 영역으로서 이것이 타당하나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은 먼저 다른 입법 사례를 검토를 했었고 당시 복지부 관련 법률을 처리할 때 법무부에서도 달리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가 기본……

○**윤준병 위원**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안호영** 차관, 짧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해 보면 지급절차 간소화에 따라서도 일정 추가 재정이 소요되고 재직자 체당금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당장은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부터 할 것 같으면 한 40억 정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한 1700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400억 정도 저희가 지출했으니까 상당폭 한 20% 정도 올라가는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임채보장기금의 요율이 제 기억으로 0.06%입니다. 법으로는 0.2%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0.06% 정도면 그리고 또 그것의 20%면 충분히 큰…… 사업주에게는 실제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체당금이 지급되는 사업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숫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보험원리에 따라서 확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주에게 사업주의 청산을 지도하되 청산 지도할 가능성이 없으면 체당금을 지급해서 일단 체불 금품은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업주와 정부와의 관계로 전환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제를 받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권적으로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따라가자 이런 아이디어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 가지고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재직 중에 횡수를 제한해 가지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때마다 체당금으로 하는 사례는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1회 정도로 제한하고 또 저희들이 장치를 두는 게 체불 발생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재직자 체당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예를 들어 최저임금 120% 미만으로서 중위소득의 일정 부분 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간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하나 여쭙어보고 싶은 게 지금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소액체당금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윤준병 위원** 소액체당금?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소액체당금 정도의 금품은 퇴직자한테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체불 해소……

○**윤준병 위원** 알았어요, 자꾸 얘기 많이 하시지 말고.

그러면 소액체당금이라고 하면 소액체당금의 범위는 1항 4호가 소액체당금입니까? 4호·5호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7조 1항 4호.

○**윤준병 위원** 7조 1항 4호·5호가?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4호·5호.

○윤준병 위원 그런데 4호·5호는 금액과 관련된 규정이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 소액채당금을 정한다고 하는 취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일단 해 주시고요, 그 부분 뒤에서 입법을 해야 될 것 같고.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윤준병 위원 지금 임이자 위원님 걱정하신 게 채권 우선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지금도 기금이 적자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재직자인 경우에 임금 3개월분이 임금의 우선채권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금채권, 우선채권 범위에 재직자의 임금 3개월분도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답변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명확하게 하고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윤준병 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최우선변제는 퇴직 근로자한테 적용이 되고 지금 재직 근로자가 받아야 될 임금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선변제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순서는 법조문을 봐야 되는데 혹시 국장이……

○윤준병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퇴직자뿐만이 아니고 재직자의 임금채권도 3개월분은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임이자 위원 안 돼.

○윤준병 위원 그리고 임금채권은 우선변제에는 해당돼요, 임금채권은.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윤준병 위원 그러나 3개월분은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채권 3개월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최우선변제 되는 것은 그게 결국은 도산되어 가지고 나중에 재산을 배분, 자산을 배분할 때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자한테 적용이 되도록……

○윤준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받는데 그런 근거 규정 때문에 혼선이 생

겨서 정책 판단이 잘못 이루어지지 않도록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차관님, 제가 정부안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7조 3항인가 그쪽 끝에 내용들이 다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들.

보면 어쨌든 퇴직 근로자 중심으로 채당금 지급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만 거기에 재직자가 들어가면서 재직자의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직자 관련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라고 안을 내셨어요, 정부안으로. 그렇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셨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재직 근로자에게 채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채당금 지급 범위와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보완조치 이것도 이 안에다 다 담으셨어요, 정부입법 안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이수진(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 설명을 지금 하시기는 하셨는데 질문에 그렇게 딱딱 정부안 담은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직자 채당금 같은 경우 이게 새로 도입될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어떤 기금 소진 문제 이런 우려를 하시면서 제기를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특히 퇴직 근로자는 명확히 사업장이 종료됐다는 것이 구분이 되는데 재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랑 근로자가 서로 담합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허위로 재직자 채당금으로 갈음하는 이런 게 또 현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배 정도만 추가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법 개정안에는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직 근로자에 대한 어떤 생활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재직자 체당금의 도입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부터 일단 보호를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소득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7조의2 3항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항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 동안에 1회만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겠다.

○이수진(비) 위원 이것이 사업이예요, 사업장이예요? 하나의 사업, 사업장,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여기에 사업이 약칭이 돼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것이지요.

○이수진(비) 위원 예.

○소위원장 안호영 잠깐만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관련돼서 여러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한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안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 좀 전에 논의를 했고 잠깐 정회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따가 다시, 이 법안 말미에 또다시 논의는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조금 생각해 볼 점은 이게 지금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재직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문제하고 또 체당금을 지급한 후에 이 채권에 대해서 회수하는 절차와 관련된, 국세채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또 회수하는 문제가 있는

데 그런 문제하고는 약간 구별해서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선 다음 조항인 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설명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체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금품의 규모가 거의 법원에서, 저희들 자료에는 99.3%가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체불금품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체당금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은 하여간 체불 확인서로, 확정판결이 아니고 체불 확인서로 갈음해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지급 절차 간소화는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하는데, 대상이 소액체당금인데 소액체당금이 법에서 얼마를, 어디를 소액체당금으로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라든지 이것을 좀, 소액체당금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이 대신 지급할 체당금의 범위는 앞의 7조의2에 나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리고 휴업수당 그다음에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체당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윤준병 위원 지금 없잖아요, 법에.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법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존……

○윤준병 위원 그래서 법에서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상을 좀 한정해 주자

하는 게 제가 제안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지금 잠깐만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는 일반체당금의 금액의 규모, 저희들이 대신 지급하는 한도……

○윤준병 위원 내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 소액체당금이 1000만 원 이하고……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일반체당금은 22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윤준병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게 내가 보니까 대통령령에서 소액체당금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고시로 이렇게 구체화하던데……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고시로, 제가 방금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법에서 소액체당금, 이제 재직자도 마찬가지로, 재직자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8항인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소액체당금이라면 7조의2의 그 규정을 원용하든지 아니면 이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한정하든지 뭔가 위임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체당금’ 그러면 일반체당금인지 소액체당금인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 하는 취지예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법에 근거를 두고서, 영으로 정하든 법령에 근거를 두어서, 고시로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를 두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소위원장 안호영 또 다른……

○박대수 위원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박대수 위원 저도 윤준병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당금 종류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박대수 위원 종류별로, 체당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종류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느냐고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지금 위원님께 전해드릴 자료…… 자료 하나 있는 것 저희들이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치…… 취지는 저도 좋고 물론 수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도덕적 해이의 방지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재정건전성을 해결하고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돼요.

아까도 제가, 저희 방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재정의 건전성 이것이 또, 아까 괜찮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불확실한 그런 것을 제가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조건부 수용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지금 박대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대상은 소액체당금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소액체당금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상 일반체당금하고 소액체당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소위자료 4페이지 내용입니다. 아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데요.

4페이지 보시면 체당금 제도의 개요와 지원 내용, 한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당금의 종류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체당금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도산·파산 신청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당해 사업장에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 부분은 이 부분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에 체불액을 지급하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은 표를 보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소액채당금은 사업주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로 현행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채당금으로 지원되는 한도는 지금 항목별로 구분해서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임금이나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휴업수당은 상한액을 700만 원으로, 퇴직급여는 7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총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지금 정부는 채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소액채당금 부분에 관해서 그것에 한해서 판결 등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이런 취지는 명확한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윤준병 위원 전문위원, 4쪽 설명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이 법에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든 고시로 위임하든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고 하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줘라 이런 취지예요, 다른 이의가 아니고.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정부 측,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소액채당금의 범위를 말하자면 법에 소액채당금이란 뭐 뭐 뭐 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또 그렇게 규정하는 게 여러 가지 입법 기술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 소액채당금의 범위나 이런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라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소액채당금으로 지급해야 될 게 금품의 범위 자체는 7조에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까 하는 것은 현재 고시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을 해 보면 법령에 근거를 두고서 대통령령으로, 예를 들어서 소액채당금은 뭐 뭐 뭐 뭐에 해당하는 금품으로서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로

지급한다 하는 것을 넣으면 그게 고시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는지……

○윤준병 위원 자꾸 반복을 계속하게 만드시는 데……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죄송합니다.

○윤준병 위원 이해를 줌……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에서 채당금이라고만 했잖아요. 그리고 7조 1항, 3호까지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일반채당금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윤준병 위원 일반채당금이고, 4호·5호인데 그것을 가지고, 4호를 가지고 소액채당금이라고 하는데 소액채당금의 금액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니 그런데 정부는 1000만 원 이하를 소액채당금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내용을 예를 들면 4호도 사실 금액이 1·2·3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는. 그러면 소액이라고 하려 그러면 금액이 1·2·3호로 하는 금액보다 4호가 항상 적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정할 건데 그냥 4호가 소액채당금이다 이렇게…… 일응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법리적으로는 항상 맞지 않다, 그러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든 법에서 정해야 소액채당금이 특정화가 된다, 그 근거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왜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틀이 달라 가지고…… 우리 기준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지금 7조에 보면, 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가 소위 저희가 편의적으로 일반채당금이라고 명칭하는 게 1호부터 3호까지인 거고요. 현행법상 4호가 편의상 소액채당금이라고 저희가 명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임금체불확인서 등으로 이것까지 포함하는 게 4호·5호가 개정되면 그게 소액채당금으로 저희가 명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임금채권보장법의 기본 시작은 뭐냐 하면 사업이 도산이라든지 파산이 돼서 없

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 경우에 대한 체당금 대신 지급해 주는 개념으로 도입된 거고 그 이후에 3호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판단해 가지고 지불능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거고, 특히 4호·5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도산이라든지 파산이 안 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일반체당금이 지급한도가 2100만 원이고 소액체당금이 지급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일반체당금 1호부터 3호까지 적용되는 체불금액의 한도를,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체불금품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해야지 이것은 일반이고 이것은 소액이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를 들면 일반체당금 같은 경우와 소액체당금에 있어서의 이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 이것은 1·2·3호가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4호가 적용되는 절차상의 차이에 불과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차상의.

그래서 4·5호에 해당되는, 절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액으로 봐서 실링을 10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1·2·3호의 경우에는 실링을 21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지 이게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일반, 소액 이것을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 체불 사정에 따라 가지고는 도산·파산인 경우에도 실제 금액이 5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소액체당금에도 실제의 체불금품이 30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1·2·3호에 해당되는 것은 체불금품의 금액이 이런 경우에만 적용되고 4·5호에 해당되는 것은 체불금품의 규모가 이런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라고 적용하면 이게 애초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있어서의 체당금 제도라든지 이것의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위법령에다가 1·2·3호에 있어서의 체불금품의 한도를 이렇게 정한다라는 것은 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소액체당금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서 내용을…… 그런 예로 들면 7조 1항 4호·5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다음에 정부안에, 31쪽 보면 ‘체불 임금 확인해서’ 7조 제1항 5호, 7조의 제1항에 해당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4호가 해당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도 7조 제1항 제4호·5호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간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좋고요. 그렇게 특징이 되면. 그러면 금액적인 소액이 아니고 예를 들면 7조 1항 4호·5호에 해당된다 그러면 4호·5호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연결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이후에 조문 정리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합시다.

○소위원장 안호영 차관님, 이게 지금 소액체당금 절차 간소화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의 그 조항이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조문이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여기에 소액체당금이라는 말이 있나요, 법 조문에?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없습니다. 법률에는 지금 일반체당금,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률에는 없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사실은 법률의 규정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령에서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지금 기준이나 요건이나 지급하는 범위에 관한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분해서 그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그 용어도 적정한 용어를 쓰자, 소액체당금은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까지 포함해서 법률에서 정확한 용어를 써서 재구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고용노동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발의 취지가 뭔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지요. 그게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 취지조차도 이해를 못 해. 그레 놓고 무슨 법안소위 와 가지고 심사하는 데 의견을 제출합니까? 공부를 좀 하고 오시든가 의견들을 정리해 갖고 와야지.

○소위원장 안호영 향후에 우리 법안심사를 할 때 정부 측에서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정부 측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항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37쪽인가요? 체당금 지급 사유 추가 부분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37쪽에 휴업 등을 사유로 일반체당금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반체당금은 그 취지상 사업장이 도산된 경우 등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른바 저희들 용어로 소액체당금 지급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 저희들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웅 위원 저도 ‘휴업·경영상의 어려움’까지 집어넣는 것은 너무 좀 불확정 개념이 강해지는 것 같아서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경영상의 어려움’이 뭔지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일단 보류, 이 법안 처리 문제는 보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청년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우선 지급, 40페이지 규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선해야 될, 저희는 근거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

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부분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항,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43페이지, 국세채납처분 절차와 관련해서 첫 번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준용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이 경우에 저희들이 재직자 체당금 제도까지 도입하는 것에 전반적인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보험료징수법의 절차를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이미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저희도 정부안대로 채납처분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가지 논의가,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국세채납처분 변제금 회수 중에서 보전압류 그다음에 납부기한 전 징수, 징수유예,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둘 실익이 없거나 그다음에 지금 채납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다시 하시기로 한 상황을 감안할 때 보전압류·징수유예·분할납부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중장기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이 법안은 장철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장철민 위원 이따가 논의하실 때, 다 어차피 붙어 있는 내용들인데 다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럴까요? 함께 논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면 다 마찬가지로인데요. 사업양수인 및 출자자에게 2차 납부하는

부분도 전문위원 의견처럼 저희들도 조금 행정력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지금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1쪽의 체당금 지급제한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안 중에서 전문위원이…… 저희들 안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지급한 체당금은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자고 하는 취지이고 다만 여기 전문위원 의견처럼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추가해서 중복 지급 금지하도록 하는 그 의견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추가해서요? 그런데 그 부분만 따로 넣어서 이게 법안 정리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63쪽 하단 보시면 제7조 3항에 있어서 ‘근무기간 또는 휴업기간’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의견은 출산전후휴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63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7쪽인가요, 체당금 용어 변경?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체당금 용어 변경은 윤준병 위원님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용어로 용어를 변경하는 게 용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법률에 이러한 체당금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저희들이 한번…… 법제처와 지금 협의를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법률 개정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 법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윤준병 위원님.

○윤미향 위원 제가 먼저……

○소위원장 안호영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좀 시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

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고용노동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좀 고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임기응변하지 말고.

이 용어와 관련해서 의견을 그렇게 줘서 내가 한번 부처대로 봤어요, 법제처·고용노동부 지금 현재 법령 개정과 용어와 관련해서.

특히 체당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내가 쪽 조사해 봤는데 2007년도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용어 하면서도 이 용어 고쳐야 된다고 제안하고 대안도 내놔요. 2014년도에 같은 맥락이었어요. 최근에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여기에도 그 내용 똑같이 들어 있어요. 국회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도 똑같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 법제처도 이미 2007년부터 같은 용어 똑같이 반복했고 2014년도에 똑같이 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왜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이 해 놓고도 이런 얘기를 심의할 때 고민도 하나도 안 하고 와 가지고 뭘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45쪽 한번 봐 보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면 ‘미수금의 대지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문이?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윤준병 위원 지금 미수금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변제금이에요. 그다음에 변제금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 ‘대지급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가 법령용어를 통일한다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법률 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봤어요. 군사법원법, 우리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체당금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 현황을 다 봤는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당금하고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당금 용어가 용어는 같지만 포함되어 있는, 포섭되는 개념은 다 달라요. 뭘 통일한다는 거예요, 뭘 통일하기는?

○소위원장 안호영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혹시 법제처에서 하고 있는 용어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일단 저는 ‘체불 임금등’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앞에 용어를 안 써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변제금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제금 대지급금’이 풀 용어인데 오히려 용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지급금’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법률에서도 대지급금을 같은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쪽 검토가 되어 있고 실제 법제처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 대안으로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고용노동부가 현재 이 법안 윤준병 의원님 안대로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으면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죄송합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 내신 것을 충분히 법제처의 그동안의 그거나 이 용어 변경의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적절한 용어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숙고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당금이 익숙한 용어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실무적으로는 아마 체당금으로 그냥 가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다른 데 해당 한 번 상황을 살펴보고 하자라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제가 봤을 때는 이 체당금이라는 얘기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용어로 익숙하게 공부를 한 법률가들이나 좀 익숙하지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바뀌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아마 정부 측에서……

○**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무사들이고 뭐고 다 체당금이라고 쓰고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용어를 알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체당금이라는 게 다른 데서도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쉽게 바꾸는 게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이것도 사실은 체당금에 비해서 그렇게 쉬운 용어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하되, 법률용어를 어떻게 바꿀까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안호영** 지금 정부 측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윤준병 위원님, 오늘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말고요,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확실히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 정부 측에서 그 사이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것 다른 대안들이 뭐가 있을지는 더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문용어를 우리가 검토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라고 그런 거잖아요. 노무사들만 알기 위해서 법률 용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 직원들만을 위해서 만듭니까? 이것도 처음 오면 한참 공부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체당금 용어는 노동법에서는 임금 등에 대한 대지급금을 의미하지만 다른 데는 용어 보니까 그냥 미리 충당된 금액 이런 뜻이에요. 그 용어로 다 써요, 다른 데는. 전문적인 용어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노동관계 법령상에서 통용되는 용어에 불과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익숙하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화된 용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안호영** 윤준병 위원님, 우선 그 취지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님, 이런 절차로 저희가……

○**소위원장 안호영**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다른 용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지금 현행 용어에 익숙한 예를 들어서 노무사뿐만이 아니고 노사, 체당금 또 체당금의 용어가 여기저기에, 저희들 임금 체당금의 경우에도 하위법령부터 구석구석에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다음에 대신 대체해서 쓸 용어로 뭐가 적절한지 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노사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윤준병 위원** 하여튼 오늘은 더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양해를 하는데 다음 소위 할 때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오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바뀌 갖고 다른 법들이 바꾸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데가

먼저 바꾸고 난 뒤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 있나?

○소위원장 안호영 이 문제는 정리를 하시지요. 오늘은……

○임이자 위원 바뀌요, 그냥.

○윤준병 위원 오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바뀌.

○소위원장 안호영 오늘 바꿀 수도 있는데 우선 정부가 좀 더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미뤘다가…… 대신 우리 정부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임이자 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바꾸고 다른 데 따라오면 되지.

○소위원장 안호영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용어가 있는데 당연히 기존에 법률용어 쓰던 거니까 다 익숙해 있지요. 그러나 그 법률용어가 여러 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가, 쉽게 납득하지 않는 그런 법률용어는 우리가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그런 중에서 이 해당금이라는 용어도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윤준병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계속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음에는 그 부분 결론 낼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예, 그러시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근데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한다 해도 계속적으로 현장에서는 안 바꾸면 그걸 해당금을 쓰는데 지금 달라질 게 뭐 있어.

○소위원장 안호영 아니아니, 다음에는 저희들이 결론을 낼게요. 그리고 우리가 내면 되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지금 내지요, 왜 그러세요.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윤준병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나는 바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입장은 나는 별로 올바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른 법률에서 대지급금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금의 용어는 대신 지급한 금액이잖아

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대지급금이요. 대신 지급한 비용이라고 쓰는 것이 더 한글적인 용어인데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한문적인 용어를 조금 가미하면 대지급금이네요. 그보다 더 보편적인 용어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법률에서 대지급금이라고 쓰고 있는데, 법령 사용례가 있는데 뭘 더 고민하겠다고.

○임이자 위원 오후에 결정합시다, 오후에. 오후에 결정하시지요, 오후에.

○소위원장 안호영 예, 일단은 충분히 취지는 알고요. 어쨌든 일단 이것 보류해 났다가 다시 또 논의해서, 이따 한번 정부도 좀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다음 안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69쪽, 변제금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는 안은 그 내용상으로는 타당한데 저희들은 다만 지금 현재 현행 규정에도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되는 미지급 임금 등을 이렇게 괄호 처리해 가지고 8조의2에서 (이하 변제금이라 한다)라고 약칭으로 정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둘 실익이 있을는지 하는 측면에서……

아, 저희들 정부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데 실익이 없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장철민 의원처럼 별도 규정을 두는 게 아니고 저희처럼 약칭으로 처리하는 게 어떨는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어쨌든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지요?

○윤준병 위원 저기는 맞는데 49쪽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변제금의 징수’ 해서?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윤준병 위원 49쪽, 그 내용을 일종의 수용한 거지요, 정의에?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49쪽 정부안 보시면 됩니다. 변제금의 징수, ‘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8조 1항에 따라서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辨濟金)”이라 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런데 이런 데 앞 부분에 정의 규정을 따로 두는 건데……

장철민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렇게 넣으면 동의하시지요?

○장철민 위원 행정편의상 정의 규정이니까 정부안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안처럼이요?

그러면 이 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굳이 얘기할 것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소위원장 안호영 이것은 보류로 일단 해 놓으면 되겠네요.

○임이자 위원 차관님은 정부안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장철민 의원안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니요, 처음에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정부안이 있고 장철민 의원안이 있는데 장철민 의원안 하는 방식보다 정부안으로, 약칭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장철민 의원님께서 변제금의 정의 규정을 따로, 별도로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장철민 위원 예, 이게 철학적인 정의 규정이면 정의 규정에 넣는 게 맞는데 어차피 행정편의상 약칭 규정이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49페이지에 정리된 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시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아까 정부안은 통과된 거예요, 나 없는 사이에?

○소위원장 안호영 아니, 우리가 다 통과한 것은 아니고……

○장철민 위원 아니, 통과가 된 게 아니라 49페이지에 그 똑같은 내용이, 정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장철민 의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시고요.

다음의 안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71페이지, 부과금 정

수인데요. 소액채당금을 반복해서 소액채당금으로 해결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로서의 부과금을 징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하는 측면인데 저희들 의견으로도 일단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임금채불 반복에 대해서 소액채당금으로 반복해서 해결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일단은 논의를 넘어가기로 한, 이따가 다시하기로 한 국세채납 처분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부과금도 그렇고 5배 징벌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전부 다 일종의 부정수급이나 과잉,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이 법안으로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거냐 아니면 특정해서 몇 개를 정돈해 가지고 우리가 부정수급이나 너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을 막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따 채납처분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사항이니까 이것을 그때 다 포함해서 어떤 것들만 선택을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73페이지 그 밖의 개정사항 네 번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이 있는데요. 73페이지 왼쪽 아래에 재직 근로자 채당금, 재직자 채당금 도입하는 경우에 그 재직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안에도 있는 내용이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 처리 과정에서 재산목록 제출명령은 결국은 저희들이 그 채당금 지급하고 관계없이 자체 청산을 지도, 사업주에게 청산을 지도하는 단계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제출될 수 있다면 여기에 자체 해결하는데 도움은 될 건데 다만 재산목록의 제출 여부를 가지고 거기에서 지연 제출을 한다든지 제출을 안 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사건 처리

가 조금 더 지연될 것 아니냐, 제출명령을 둘러싸고 또 지연될 사유가 있다 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법 23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고용노동부 의견으로 인용된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는 게, 자료제공 요청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정부 이야기 이해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그러나 아까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꺼번에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75페이지의 부정수급 제재 관련해서 체당금 부정수급 시에 5배까지 추가…… 지금 1배로, 같은 금액으로 돼 있는 것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자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정부안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장철민 의원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형벌감면과 관련해서는 수사 협조 시에 형벌감면 규정이나 자진신고해서 형벌감면 규정을…… 이게 형사법 체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법체계상 저희들 법에서 이렇게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지금 그래서 정부 의견은 체당금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그 뒷 부분의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우리가 이미 5배에 대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러나 임의적 감면에 관련돼 가지고는 형사법 체계에 부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임의 감면하는 법을 개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웅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앞의 제재를 좀 추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

다고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독점……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일 때는 행정처분 관련된 내용들인 것이지 형사처벌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검찰에 폴리바게닝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영미법계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나라 검찰에 폴리바게닝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제가 이 법안에 넣기는 했지만 사실은 저도 부정수급 제한, 이 제재수단을 모든 것을 다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는 일종의 체당금 제도의 확대와 편의성의 증가 방향으로 입법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도 해 왔었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으세요, 다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다같이 놓고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생각이고……

부정수급 제재를 위한 것도 단순하고 최소화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배 부분이 제대로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좋습니다. 취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78페이지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정부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자료협조 요청은, 자료제공 등은 체불 임금 지급, 사업주 용자 등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업무의 범위에 변제금 징수를 추가해서 변제금 징수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정부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이 부분은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다음에 83페이지 내용입니다. 현장조사 주체 확대는 현재 임금채

권……. 현행법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서 그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정안 내용은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조사행위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넘어가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이것은 계류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85페이지의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임채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부과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년으로, 산재보험료와 별도로 5년으로, 부담금만 5년으로 하는 것은 달리 정하기는 행정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도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87페이지의 재산목록 제출명령 거부 시의 제재수단이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로 돼 있는데 개정안 내용은 이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전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형사처벌의 내용이 여기 대체토론 요지에서 보인 것처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로 굉장히 세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협 효과는 있겠습니까마는 실제로 벌이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기에는 시간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측면에서는 일정한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로 하는 게 자료 확보에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좋겠다 이런 취지요? 동의

한다는 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법률용어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고……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법률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달리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이견 없으시고요.

○임이자 위원 부칙은 어차피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윤미향 위원 부칙은 다 된 다음에 해야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해서는 다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쟁점으로 우리가 아직 정리가 안됐던 게 재직자에 체당금을 지급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체당금에 대해서 회수를 할 때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준해서 할 것인지에 관련된 쟁점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논의를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지금 시간이 12시여서 점심……

(「먹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윤준병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지급금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이따가 회의가 속개되면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그사이에 위원님들께 법안 설명할 부분들, 재직자 체당금 부분하고 회수 절차에 관련해서도 아직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충분히 설명해서 속개하면 다시 그 부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안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오전에 임금채권보장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는데요. 먼저 합의된 내용하고 쟁점을 조금 확인하고 그다음에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 법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했는데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재직자 체당금 지급 문제 그다음에 체당금 지급 절차의 간소화 문제, 국세채납처분 절차 도입과 관련해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준용 문제, 보전압류, 납부기한 전 징수, 징수유예 그다음에 사업양수인 및 출자자의 2차 납부의무 그다음에 부과금의 부가 및 징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변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희들이 합의를 한 부분은 체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정비 부분,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부정수급 제재 강화,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현장조사 주체를 확대하는 것, 재산목록 제출명령 거부 시 제재수단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 법률용어 정비 사항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직자 체당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가운데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임이자 위원 다른 의견이시라면 어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안호영 지금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철민 위원 정부안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뭐라는 거예요? 재직자?

○장철민 위원 예.

○이수진 위원(비) 재직자를 포함하는 정부안 기준.

○김웅 위원 지금 이게 부작용 해소 방안이 마련된 건가요? 부작용 해소 방안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관련해서 여러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재직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서 정부안이 있는데 재직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체당금을 지급할 때 이것을 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있고 그다음에 재직자에 대해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한 이후에 국세채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물론 국세채납 절차에 따라서 도입하는 것은 관련은 있지만 다른 문제니까 우선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은 도산한 이후에 퇴직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직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나 이런 부분은 동의들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수진 위원(비) 맞습니다. 다 동의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소위원장 안호영 김웅 위원님, 이 부분은 이의가 없으시고 채납처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김웅 위원 아니, 저는 다시 한번 이것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것의 필요성은 다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지금 다 집어넣을 것인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이 제도가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결국 기금 고갈의 우려가 있다는 것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완책이나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위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당장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소위에서 답을 내놓은 게 없잖아요? 이 두 가지는 그냥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감수합시다 이건 가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김웅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정부 측 의

견을 한번 들어 볼까 하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문제됐던 것 중의 하나가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임금 체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여야 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직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말하자면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만약 그 회사에서 퇴직을 했거나 그러면 체당금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달리 뽕족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직자에 대해서도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할 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체계를 바꾸어 보자 하는 걸로 이 법안을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정부 어떻습니까? 법안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저희들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직자 체당금을 모든 재직자에게 체불이 발생하면 다 재직자 체당금을 지급하자는 뜻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시작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집행 상황을 보면서 적용을 확대해 나가자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재직기간 중에 1회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변제금 문제는 이게 첫 번째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임금 체불 신고가 대부분 퇴직 이후에 체불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에 사업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도 이게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제한적으로 도입을 할 경우에는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다. 다만 거기에 따른 체납처분절차 등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더 용이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하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웅 위원 그러면 실익이 사실상 없다는 건데

실익이 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실익의 측면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스타항공이라든지 긴급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체당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를 하자, 다만 고용은 유지했으면 좋겠다, 경영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재직자 체당금을 구상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게 도입이 되고 집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웅 위원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데 그게 더 도덕적 해이 아니에요? 대주주는 아무런 책임 안 지고 결국은 기금 가지고 노동자들 밀린 임금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딱 도덕적 해이 같은데……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임금채무를 완전히 면탈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채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느냐, 근로자는 우선 체당금에 의존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체당금을 지급한 국가가 대위해서 행사하느냐 하는 채권 행사 주체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웅 위원 보통 그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이수진(비) 위원 저도 잠깐…… 차관님, 질문 좀 드릴게요.

방금 이스타항공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코로나로 다른 업종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기타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노동자들이 휴업이든 유급휴가든 이렇게 수당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거기 해당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이수진(비) 위원 그 업체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나 그런 전제조건들을 신청하거나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지요. 청산절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럴 경우에도 이게 유용한 거고.

이 기금이 사용주한테서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체당금이 됩니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사용주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먹고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근로를 했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주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에서 0.06% 추가하는 그 돈 가지고 다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아주 상식적인 거고. 다만 그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잘 마련됐느냐, 재직자가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설명하셨고 법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노동자들의 소득기준, 재직자들의 소득기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소액채당금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플러스, 사업이든 사업장이든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비용 추계가 나온 거고 그 비용추계를 봤을 때 이 기금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재직자들은 사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사용자의 의무예요. 의무인데 받지 못한 것은 당연히, 산재보험에서 0.06% 뎀 기금에서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정부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체불 청산 지원 사업자 용자제도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내실화해 가지고 사업주들이 조속하게 본인들이 체불한 것들에 대한 청산을 유도하게 하는 것들도 노동부의 큰 숙제이기도 하고 절차를 좀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맞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자 채당금 확대하는 것은 노동부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거든요.

○소위원장 안호영 일단 재직자 채당금 지급의 효과라든가 우려하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예.

○임이자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정회 좀

하시고, 채당금에 대해서 내가 우리 당 위원님들하고 얘기 좀 할게요.

○소위원장 안호영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기 전에 그것만 하나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채당금 지급절차 간소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윤준병 위원님께 아무래도 설명을 쪽 드렸는데 혹시 그 점과 관련해서 윤준병 위원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가 한 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게 외부의……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쓰고 이게 시행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식이나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좀 따져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에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게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외에 다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만약에 그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서식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조에서 일반채당금·소액채당금 구분해 가지고 전체적인 체계나 조문을 좀 수정하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잠깐 의논을 해 봤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일관성 있게 바로 정리하기는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것을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것은 다시 다음 기회에 한번 입법 추진했으면 합니다.

○윤준병 위원 정회하고 내가 그 얘기는 조금 할게요.

○소위원장 안호영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했다가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안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사이에 여러 의견들 조율이 있었는데, 조율된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를 할까 함

니다.

먼저 재직자에 대해서 체당금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고갈 문제하고 또 지급해야 되는 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김웅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넣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을 꼭 주셨는데요. 정부 측하고 윤준병 위원님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서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취지를 반영하기로 하되 자구수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이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취지를 반영하되 구체적인 자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을 지급한 이후에 회수하는 절차를 국세채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안들이 죽 있는데 이 안들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다시 다루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쉬운 말로 다시 바꾸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합의된 용어가 있습니까?

정부 측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님들 다른 대안이 없으시면 윤준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채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고 약칭은 ‘대지급금’ 그렇게.

○**소위원장 안호영** 윤준병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예.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의견……

○**임이자 위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는 한 그렇다’고 했지요?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웃음소리)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닙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그러면 ‘채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고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혹시라도 자구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장철민 위원** 부정수급 5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예, 5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로 이의가 없이 다 합의가 됐습니다.

○**임이자 위원** 하되 그 밑에 ‘다만’ 그 부분은……

○**장철민 위원** 예, 그 밑의 부분은……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제 부칙 넘어가야지.

○**소위원장 안호영** 국세채납처분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철민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있는데요, 일단 2개 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는 것은 다른 법안 다루고 마지막 부분에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1개라도 의결하시지 그래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럴까요?

그러면 임금채권보장법 부칙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94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 부분인데요, 정부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되 국세채납처분 절차는 공포 후 1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된 관계로 공포 후 6개월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의 체당금 지급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연말에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이 6월 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체당금 지급제한 규정은 이 부분과 같이 함께 시행을 하고 싶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어서 7조 3항에 대해서는 시행

일을 2021년 6월 9일로 명시하는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지금 제7조 3항에 해당금 지급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례를 두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적용례의 내용은 '7조 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제7조 1항에 따른 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부칙안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전문위원 의견은 지금 여기 의결하는 절차는 약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마지막 시간 끝날 무렵에 정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을 다루다가 쟁점이 길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 듣고 그리고 또 잠깐 정회를 하든지 보류하거나, 다음 법안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98페이지와 99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보호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1년 미만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에 당장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33% 정도에 이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을 볼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거다. 12분의 1이면 한 8.3%인데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

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사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아니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즈음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나 지금 영세 사업주라든지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만 예전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시혜적인 의미로도 1년 미만의 노동자들에게 사용주들이 퇴직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아예 안 주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서 저는 이것이 되게 많이 안타깝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사실은 단시간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인 만큼 노동 관계법에 의해서 두텁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동부에서도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저는 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너무 과하지 않냐, 그렇다면 조금 더 개월 수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또 사업주들의 의견도 담아서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길게 들 것이고 이견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은 경기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차후 차차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이수진 위원님 심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10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자료 102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중간정산제도의 개선,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의 아홉 가지 사항을 주

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예.

○임이자 위원 지금 안호영 의원님의 퇴직급여 보장법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한정에 의원님 안도 있고 김병욱 의원님 안도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꺼번에 전문위원님이 죽 해 주시고 나서 정부가 이 부분을 그림을 그려 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기는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먼저 전문위원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 줘 보세요.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각각의 안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를,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에서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지금 별도로 자료가 없이 축조심의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기는 또 부적합하고, 그렇다고 제가 구두로 말씀을……

○소위원장 안호영 혹시 별도 자료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까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기는 한데……

○장철민 위원 의사진행발언드리면……

○소위원장 안호영 예,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앞의 도입 의무화나 한정에 의원님 안까지 기금 쪽은 저희가 죽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복잡한 것은 DB형에 투자일임 도입하는 것, 디폴트 옵션 도입하는 것, 이게 아마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일괄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 소위자료로도 175페이지 정도부터 전체적인 제도 변화에 대한 정리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까지는 그냥 원래대로 논의를 하고 조금 복잡한 DB형과 DC형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이 기준으로 거기에 붙이는 방식으로 설

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임이자 위원 안호영 의원님 안이 신설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요?

○장철민 위원 안호영 의원님 안이 2개입니다.

○임이자 위원 거의 다 신설된 내용들이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지금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 수정한 것……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견 듣고 추가적인……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시지요. 일단은 정부 측에서 의견 한 번 줘서……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지금 안호영 의원님 안을, 이게 지금 법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파트가 목차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102페이지, 10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안호영 의원님 안은 임이자 위원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국회에서도 제출돼 가지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택할 수도 있고 또는 DB나 DC형의 퇴직연금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으로 할 때는 사업주가 종국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부담을 지게 되고, 그다음에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달이 부담금을 기여하고 사업주의 책임은 면하는데 다달이 적립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 자체는 퇴직할 시점에 되어서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영상황이 급박하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리고 자금이 고갈되는 사정에 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들, 소속된 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자는 이야기는 퇴직금제도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DB형이든 DC형이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C형에 따라서 매달 납입을 하든 또는 DB형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 저희들 일정한 적립 배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을 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전체적인 자산을 가지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의 재원 자체가 외부에 일정 부분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그러니까 DB형이든 DC형이든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근로자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사업주도 그렇게 다달이 외부에 적립할 경우에 의무 이행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 급박할 경우에, 지금은 퇴직금 지급의무는 나중에 닥칠 또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생길 때마다 지급해야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을 납입하는 형태로 해서 적립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 부담은 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그런 측면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서는 큰 논란은, 반대의견은 없는데 50인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노무담당자를 두고서 퇴직연금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서 연금제도를 선택을 하고 근로자한테 적절한 어시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50인, 30인, 10인 내려갈수록 퇴직연금 적용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금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금을 기금의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각 사업주들의 퇴직연금을 다 모아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해서 그 수익으로써 각각의 사업주한테 배분하는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저도 갑자기 설명을 드리려니까 그런데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각각의 사용자들이 퇴직연금 사업주하고 계약을 한 계약형 제도라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 운용관리기관을 두고서 자산관리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제도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의도하신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계약형의 제도가 아니고 기금형 제도라 그래 가지고 별도의 기금을 관리하는, 각 사업체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법인을

두고서 그 수탁법인의—그러니까 사업주한테 독립된 것이지요—책임하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산 운용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법 규정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기금형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절차, 기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안호영 의원님 안은 174페이지에……

○소위원장 안호영 잠깐만요.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앞 부분하고 취지가 조금 달라서 이것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지금 정부 측 의견 있었잖아요? 먼저 그 부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얘기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저는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이 퇴직급여 보장법은 뒤에까지 짝 다…… 지금 차관님 설명 잘하고 계시는데 설명 다 듣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전문위원님 의견 들으면서 하나하나 해 보시자고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DC형 그 부분도 좀 차관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선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제도 변화에 관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논의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잘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조하면서 제가 그냥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퇴직연금 운용은 연금상품 중에서 개별 사업주 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책임하에서 운용하도록 하는데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고, 기존의 근로자들 성향이나 사업주 성향이나 이게 노후소득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 그런 부분의 손실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그러니까 적금이라든지 일정한 이율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재원으로 국민연금 외에 기업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보나 중요한 측면은 퇴직연금의 자산을 잘 운용해서,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퇴직연금이 다른 외국 사례나 다른 우리 공적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수익률이 통상 5~6%, 외국 같으면 7%쯤 되는데 우리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수익률로는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방안의 하나로서, 예를 들면 두 가지 제도입니다. 하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하고 하나는 DB형에 있어서 투자일임계약, 전문적인 자산운용기관에게 투자를 맡겨서 그 자산운용기관의 능력에 따라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한 설명이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있는 도표입니다.

그러면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통상 위에서, 현재 제도하고 바뀌는 제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원리금 보장상품 우선으로 연금상품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선택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 보통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 외에 추가적인 수익률 높은 연금상품을 의무적으로 디폴트 옵션으로 제시하도록 해서 원리금 보장상품을 특별히 선택하지 않는 한은 그런 방법이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이자 하는 것이 178페이지에 나오는 디폴트 옵션의 기본적인 제도의 골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운용하는데 사업주가 전문적인 자산운용기관에게 일정한 요건에 맞는 투자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기관에서—예를 들면 투자신탁회사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일정하게 자산을 자기 능력껏 운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용하자 하는 것이 DB에 있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종합적으로 180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그렇게 될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

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익률 제고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다가 오히려 근로자 노후소득 재원을 고갈시키는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기금 운용하는 사례나 저희들이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둔다면 그러한 손실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 하나 할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대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깐요.

178쪽, 179쪽 이게 대체적인 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내용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큰 그림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시간관계상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다 하세요.

○소위원장 안호영 앞에서부터 해 나가면 우리가 논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 되니까.

○전문위원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 102페이지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10~29인 사이의 기업은 55.3%, 10인 미만 소기업은 17.7%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것을 적용할까의 문제인데요. 자료 104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시점을 안에서는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30~100명 사이에서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서 5명 미만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년 6개월 이내로

시행시기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시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간단히 결론만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은 연금으로의 의무화가 연금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금 퇴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간정산제도에 의해서 중간에 퇴직금을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연금제도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지금 규모에 따라서 도입률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규모 작은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9항 관련해서는 앞부분의 의무화 부분하고 뒷부분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까지 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주가 수립한 운용계획서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취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음 항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111페이지, 3번 중도인출(중간정산)제도의 개선 사항입니다.

안 22조의 내용입니다.

현재는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그 사유와 더불어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직 중에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부분까지 인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3페이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정의에서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7페이지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관리·운영 및 자료의 활용 관련된 사항으로 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123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 교육제도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여서 내실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제도 일반에 대한 교육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자료 128페이지, 7번 정부의 책무 강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29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의 책무 사항으로 2항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평가 사항은 책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평가에는 평가 대상, 내용, 결과 공표 이런 사항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료 130페이지 사항입니다. 제8번 항목으로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도록 안 제46조제1호의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벌금형만 부과할 것인지 징역형을 같이 할 것인지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8번 벌칙 규정 부분에서 상단 네모 표 부분은 국회 법정형 정비기준에 따라서 벌금형을 징역 1년 대상 벌금 1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133페이지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의 의무화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134페이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가 신설되는 사항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0만 원 이하, 최소적립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103쪽으로 넘어가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저는 사실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의 문제, 여기 지금 단계로 제시를 하셨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걱정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한 이후에 언제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을 5년, 6년 6개월 이렇게 정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극복 상황을 예측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되기는 해서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코로나가 극복된 시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듭니다.

대기업들이야 이미 85% 이상 하고 있고 큰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는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기금을 만들어서 잘 운용해 보는 방식으로 일단은 제도 운영을 해 보면서 의무화 시점을 이후에 확정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수 위원님.

○박대수 위원 장철민 위원님에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혹시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김웅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마 올해 11월쯤 되면 전체적으로 집단방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너무 초유의 사태라서, 특히 저희가 지금 환노위에서도 저부터 시작해서 50인 미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쏟아 내고 있어서 솔직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말 좋은 안이기는 한데 한 6개월 뒤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역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들어오고 있고 26일부터 접종을 하니까. 위원장님, 이것 6개월 뒤에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안호영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얘기는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시고, 대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임이자 위원 그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장철민 위원 어차피 연결되는 내용이니깐요.

○소위원장 안호영 큰 흐름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장철민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화하는

것들의 시점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너무 판단에 곤란한 상황에 있지만 일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퇴직연금들을 할 때 여러 리스크를 헤징(hedging)하는 것을 우리 근로복지공단이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도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화 부분은 김웅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정기국회나 이때 한번 논의를 다시 해보더라도 이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웅 위원** 그런데 물론 18조의2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달리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군데군데별로 지금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 바로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00인 이상 같은 경우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 정도는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들을 뽑아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안호영** 저도 법안을 낸 입장에서 여러 고민이 좀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문제는 하여간 잠깐 논의를 보류했다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이것은 정부 측, 이게 꼭 의무화를 전제로 해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무화 논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바로 결론을 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다른 내용, 부분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 우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의무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자,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 다만 준비할 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이것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꽤 준비할 게 많다……

제도적인 내용은 저는 잘됐다고 봐요.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퇴직할 때 지금 퇴직금이 퇴직자에 대해서 부담이 있잖아요. 그

리고 의무화가 되면 기존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과 관련된 의무비용이 또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기업 부담을 좀 완화하면서 연착륙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함께 가야지,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한데 의무화해 놓고 현장에서 전혀 수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인 여건도 감안하지만 또 현장에서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텀(term)으로 코로나 상황을 보되 6개월 이후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한다고 나름대로 시한을 정해 놓고 6개월 이내에 이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태들을 제대로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 이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뭐 위원님들 아시는 부분인데……

이 제도 의무화하면 기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퇴직금도 다 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도 납입을 새로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진짜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부분은 기존 퇴직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퇴직 시에 그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법 시행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만 그때부터 사업주가 연금으로서 납입을 하면서 적립해 나가고 운용하는 그런 방향을 기본적인 제도의 골격으로 일단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뭐 그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부담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에서 수용 가능성 있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업주들과 협의도 하고 현장 여건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6개월 이후에 준비 상태를 같이 놓고 의무화 여부를 다시 한번 재론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 문제는 어쨌든 의무화 여부를 만약에 오늘 결론 안 내고 좀 보류했다가 논의하게 되면 그 사이에 정부 측에서 방금 윤준

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 논의할 때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에 관해서는 꼭 의무화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입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전문위원이 제시한 적용사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300명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게 적절하냐, 500명 이상 다른 사례도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은 300명 이상의 한 90% 정도가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 안처럼 300명 이상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마는……

○임이자 위원 아니, ‘저희 안’이라니? 내기는 안호영 의원님께서 안을 냈는데……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자꾸 실수를……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의 300명 이상 그대로……

○소위원장 안호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통제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설명을 해 줬는데요.

김웅 위원님, 300명 이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웅 위원 예, 저는 300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임이자 위원 지금 어차피 DB 같은 경우에는 한 95% 된다고 그랬나요, 아까? 몇 %라고 그랬지요? 95% 가입됐다고 그랬나요?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몇 %지요? 300명 이상이 현재 90% 이상 된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90% 이상 됩니다. 딱 90%네요. 자료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DB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의 퇴직금이 1년에 1개월씩 평균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딱 계산했을 때 회사가 얼마를 넣었든지 간에,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게 DB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거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DB로 다 규정이 들어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DB형의 비율이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DC 같은 경우에는 기여형으로 해서 근로자가 넣어 주면 근로자가 관리·운영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변동금액을 자기가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자 책임이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DB는 운용에 관한 책임, 지시권과 권한과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DC는 근로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쨌든 퇴직연금으로 돈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산이 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3개월, 아까 우리가 열심히 논의했던 해당금밖에는 없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노사가 같이 보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준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DC하고 DB 할 때 DC는 근로자 책임으로 하는 것이니까 관리 자체를 맡기더라도 수익 여부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인 내용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은 좀 적은데 DB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맡겨서…… 물론 손해 안 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있지만 책임은 사업자가 운용권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그게 지금 예상은 흑자를 보리라고 생각하지만 적자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DB형은 일정한 수준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전제하에 주는 건데 그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고 제도적으로 설계한 이하로 내려가면 이후에 여하튼 근로자들은 자기 책임하에 있지도 않은 것을 손해 보고 받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스템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담보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지금 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최소적립비율이라고 해서 DB형으로 할

때 퇴직연금 운용 결과가 항상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의 책임하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적립금을 운용하는데 적립금 운용 결과가 거기에 미흡하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추가부담을 통해서 그것을 메꾸어 내든……

○윤준병 위원 오케이, 그 담보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또는 추가적으로 운용 수익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하든 그것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귀착이 됩니다.

○윤준병 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소위원장 안호영 차관님, 그래서 결국은 여기 도 보면 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할지는 대통령령에 또 위임을 해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런데 거기에도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근로자대표 포함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거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준도 따로 있고요.

그러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용계획서 작성의무 부분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임이자 위원 제가 현직에 있어 봤잖아요. 이것 꼭 필요합니다.

○윤준병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중도인출(중간정산)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웅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의무화하고도 연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위원장 안호영 차관님, 이게 의무화하고 연동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현재 중간정산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유와 함께 한도도 제시하는 게……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차관님, 지금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만약에 일단 보류한다고 했을 때 중도인출제도 개선 부

분에 대한 안이 있잖아요. 보류했을 때 이 안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필요성 여부는 별도로 따지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의무화와 연계된 내용은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DB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우리가 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따로 뭐 해 주고 그런 것은 아예 없지요? 자기가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정산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직에 있어 봤잖아. 그래서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대출받고 이러면 또 이자 내야 돼요, 자기 돈 가져가지만. 그래서 중간정산, 중도인출의 범위를 조금 넓혀 주는 게 좋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생계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집에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넓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것을 더 풀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도인출 사유를 조금 엄격하게 제한하자, 그래서 노후 재원을 가지고 미리 앞당겨 쓰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하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단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 내용 보니까 현행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고 있고 다만 추가로 하는 것에 한도를 규정해 보자는 취지의 입법안이잖아요? 서로 양날의 칼인데, 지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두 가지 양쪽의 수요가 다 있어요.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측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중간정산을 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런 양쪽 목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지금 다 동의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좀 퀘스천(question)이기는 해요,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서.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도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도라는 내용을 기입한 거예요? 구상하실 때, 한도라고 설정할 때 어떤 구상을 하셔서 한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이 내용을 넣자고 지금……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이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같이 실무적으로 의견을 못 구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연금적립액의 어느 범위 이런 정도의 한도일 건데 그냥 필요한 범위라고 하는 게 지금……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별 고민 없이 일단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미리 나름대로 구상을 했는데 그게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이 정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어서 한도를 좀 넣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넣어 놓고 이후에 그것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네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한도를 꼭 넣어야 될 만큼 절실한 입법개정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런데 꼭 의무화를 하는 것 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 부분 처리를 할까요?

○**김웅 위원**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사실……

○**소위원장 안호영**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설명을 기본적인 제도……

○**소위원장 안호영** 예, 간단하게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불입하는 것을 연금상품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새로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주, 사용자 입장에서는 DB형을 도입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든지 또는 근로자에게 맡겨서 DC형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납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이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게 연금기금 적

립금의 운용을 맡기겠다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입한 금액에 따라서 자금을 기금운용 주체인 복지공단에서 운용을 하고, 물론 전문가와 여러 가지 위원회의 구조를 두고 기금을 운용해서 그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비율에 따라서 각 중소기업에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용을 한다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개별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마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7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자료의 활용 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 특별히 다른 의견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웅 위원** 앞의 것 통과됐으면 이것도 통과돼야지.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그다음에 123쪽 퇴직연금제도 교육 위탁기관 확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웅 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뭐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자는데 교육기관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선택지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그렇게 받아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그다음에……

○**장철민 위원** 그런데 앞에 기금 관련 국가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을 한번 해서 근거를 남기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3조의14가 국가지원 파트이고 사실 저희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가

지원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빼고 기금을 만들면 오히려 거꾸로 운용 관련 일종의 비용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만 안 좋아질 위험도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야 처음에 기금제도가 제대로 세팅이 되고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의 국가지원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소위원장 안호영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의 10%를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큰 인센티브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수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의 절반 정도는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두 가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절반을 부담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이른바 납입금, 근로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그 부담금의 10% 정도를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취지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정부의 책무 강화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30쪽 벌칙 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의무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의무화 연계하는 것하고? 연기금제도니까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문을 의무화와 관련된 규정들을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그 부분은 아까 의무화하는 부분과 연계된 부분 있으면 구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따가 전문위원님하고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다음에 과태료 정비 규정

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133쪽 제일 위에 있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첫 번째 내용은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아까 중소기업기금 조성하는 문제는 동의를 했으니까 의무화하는 것을 만약에 보류한다면 구별해서……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의무화는 빼고 중퇴기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9항과 관련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다뤘는데요. 제가 발의했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9항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다음 10항이 한정에 의원님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부분인데요.

○김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첨예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고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잠깐 브레이크를 한번 하시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안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한번 여쭙볼게요.

아까 퇴직연금 의무화를 갖다가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있다가? 물론 그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퇴직연금 의무화를 갖다가 우리가 보류해 놓은 상태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지금 바로 도입을 하자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의무화될 부분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물론 어쨌든……

그리고 이 부분이 참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차관님, 퇴직금을 DB가 됐든 DC가 됐든 그다음에 IRP가 있지요? IRP는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것이고 D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DB를 선호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안정적이고, 소득도 안정되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임이자 위원 DB가 됐든 DC가 됐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법으로 몇 명 이상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정하면 되잖아요. 노사가 정해서 어디로 하자 어디로 하자 정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까지 도입을 해야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을 채택한 제도를 도입한 비율이 낮습니다. 그게 앞부분, 제가 페이지는 까먹었는데……

○임이자 위원 알지요, 알지요. 아는데, 아까 낮다고 얘기했고. 그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의무화되는 것을, 이 부분은 당장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사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부터 하게 되면 하는 거지 너무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소급해서는 못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노동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DC형으로 도입을 해 있습니다. DC형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이자 위원 노동자들이 어떻게 DC를 해요? 거의 다 DB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DB형의 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DC형의 비율이

높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료는 제가……

○임이자 위원 아니, 담당 누구지요? 담당하고 내가 얘기를…… DC가 맞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DB형이 많이 있고요. 작은 기업일수록 DC형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어떻게 작은 기업인데 DC를 선택할 수가 있지요? 이해할 수가 없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게 DB형으로 할 때에는 결국 종국적으로 사업주가 적립금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급여로서 보장을 해 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할 때 사업주가 그 부분을 부담으로 느껴서 그런지 보통 DC형으로 해서 매월 납입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근로자에게 선택을 넘깁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 중에서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임이자 위원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습니까? 매년 임금이 오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뒤에 퇴직을 한다, 20년 뒤에 퇴직을 한다…… 요새도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됐다고 했을 경우에 DB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임이자 위원 최소한도 내가 30년 뒤에 평균임금이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다 그러면 $3 \times 7 = 21$, 2억 1000만 원이다 이 정도의 그런 걸 확실히……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DB 관련돼 갖고 운용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지만 사업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DC 같은 경우에는 매월 넣고 나서, 이게 근로자가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운용을 잘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만큼 더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년 뒤에 2억 1000만 원보다 더 못 할 수도 있어요. 심할 경우에는 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심할 경우에는 깡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대기업 노동자들, 금융이나

보험이나 이런 데 다니는 노동자분들도 아니고 조그만 영세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나 30인 미만들, 대부분 뿌리공장이나 아니면 금형회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어떻게 DC를 더 선택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오히려 규모가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DB로 하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서 DB를 운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근로자한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중퇴기금을 도입하면 각 개별 사업주가 가지는 부담을 중퇴기금 쪽으로, 복지공단 쪽으로 밀어 줍니다. 그러면 복지공단에서 여러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기금화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적합한 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그 기금을 운용해서 적절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을 각 기업에 있는 퇴직급여 부담, 지급해야 되는 부담에 충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하다 보면……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는 DB든 DC든 간에 각자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DB·DC에 관계없이 복지공단이 주체가 돼 가지고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복지공단 그 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무비용이나 부대비용을 다 퇴직연금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나면 농협을 한번 보세요, 농협. 처음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을 만들었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을 만들고 다 출자금 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농협은 금융만 잘돼 있고, 금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임금도 높고 성과금도 받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는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될 소지가. 그래서 주객이 전도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 다녀 봤습시다마는 DB·DC 같은 경우에 노사가 해 가지고 ‘DB로 가자’, DB

정했으면 어디에다 할 거냐, 어느 은행에다 넣을 거냐 이것은 노사가 정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연금을 갖다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 뽑고 또 사무실 임대해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이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면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고용기금 자산 운용하는 것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지공단이 여러 중소기업으로부터 적립금을 위탁받게 되면 복지공단에 운용위원회를 만들고 복지공단의 기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자산 운용은 구체적인 자산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다가 그 업무를 다시 지정해서 맡길 겁니다, 전문 자산운용기관에.

○임이자 위원 그런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은 오롯이 노동자의 후불적 임금 성격을 띠고 있는, 이것은 오롯이 노동자 돈입니다. 그렇지요? 노동자 돈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반대보다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한다 해 갖고 이 돈이 많아지거나 했을 때 이걸 운용하는 사람이나 이걸 운용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주가 되고 그러고 나서 돈이 좀 모이게 되면 다른 데 투자를 한다는등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차라리 놔뒀으면 알아서 할 텐데…… 오히려 금융이나 보험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책임은 저 주거든, DB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복지공단에서 전체적 기금을 모아서 돈의 덩치를 크게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까 하는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분, 사업주를 대표하는 분 그다음에 연금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합한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해서 일정한 요건에 맞는 상품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높이면서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이나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잠깐만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준병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염려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다가 의무화를 하면 자칫 DC나 DB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DC나 DB 운용할 때 선택옵션 중의 하나여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용하고 누가 더 잘할까 이것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잘하는 데가 선택을 받는 것이니까 이게 강제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다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DC나 DB가 현장에서 운용되는 것보다 나빠질 것 어떻게 담보할래?' 이런 내용이 되는데 선택옵션이어서 일단은 의무화는 뒤에 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운용되도록 틀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과는 또 따져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때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인 틀을 잘해서 DC나 DB가 민간 부분보다 낮게 운용될 수 있는 확신을 실제로 노사 양쪽에 주어야만 지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더라도 운용될 때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오랫동안 고민 안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노동소위 열 때까지 이 부분을 정리할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는 원래 반대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저는 원래 반대 생각을 갖고 왔는데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찬성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질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3월 달에 또 할 거니까요.

3월 달에 노동소위 할 거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3월 달에 우리가 법안소위를 법에 의하면 3회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 일정을 3회 잡기는 해야 됩니다.

○임이자 위원 그때까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장철민 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작은 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굉장히 미진한 이유가 분명

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의 접근성,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서의 비용이 큰 기업들보다 확실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건데.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의무화 제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의무화 제도를 안 하는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작은 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접근성을 높여 주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중퇴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서 위험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해정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나 등등등 노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상들도 고민을 하고 이걸 설계해서 사실은 중퇴기금 디자인을 20대 국회부터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퇴직연금제도 옛날부터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업일수록 아직도 일일십 %에 머물고 있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처음 시작하면 여러 가지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의무화 제도를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그 간극을 메워 나가는 제도로서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초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한해서 퇴직연금기금을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보류, 보류가 아니라 지금 여건상 폐기하는 형태로 되는 것을 감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왕이면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다른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취지가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생활 보장을 위해서 퇴직금제도가 현재 있는데 퇴직금제도 중의 하나로 퇴직연금을 통해서……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 장점이 있고 그래서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지금 선택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제도가 지금 현재 DB형과 DC형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DB형의 경우에는 일정한 퇴직금을 받을 시점에 받아야 되는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확정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한 번에 다 받으려고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런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매년 일정 정도 보험료를 납입해서 퇴직할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DB형 퇴직연금제도인데 차관님, 제가 설명한 게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중간에 내야 되는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막상 근로자가 퇴직해야 되는 시점에 법에 정해진 금액을 다 줘야 되는데 보험은 안 들었으니까 그것은 못 주고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중소기업에서 다시 그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다 내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를 해서 말하자면 적립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마지막에 근로자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원래 의무화하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무적으로 매달 꼭, 말하자면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하다 보면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보류를 할까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이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할 수 있었던 DB형이라든가 혹은 DC형이라든가 이런 걸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선택할 수 있고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 각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도 선택지 중의 하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선택지 중의 하나고 만약에 이 기금에 중소기업이 가입하게 되면 기금 운용

할 때 국가적으로 내는 기금,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금의 일부 내지는 운용수수료의 일부, 결국은 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의 한 사람이 되는 셈인데 그렇게 해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사업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만들어져도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또 이 기금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나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지 않을까, 다만 이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운영비용과 관련된 우려점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도입 의무화하는 부분들을 미루자고 한 그 부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요. 이 부분을 아직 지금 우리가 의결한 것은 아니니까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정말로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그 선택권 문제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야 일종에 중간 운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퇴직연금 회사에 일종의 바게닝 파워를 가질 수 있으니까 판매수수료든 운용수수료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런 여건이 아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퇴직연금이 있으면 일반 다른 퇴직연금 회사들의 판매수수료나 운용수수료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낮추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가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그러면 우선 잠깐 이 부분도 보류하고.

다음 안이 10항이지요, 한정애 의원님 대표발

의했던 법안이요? 그 항에 대해서 아까 정부 측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그냥 간단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4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정하는 내용 그리고 수탁법인 설립, 수탁법인의 명칭 및 기관 등 총 6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143페이지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DB형이나 DC형은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인 반면에 개정안의 기금형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신탁을 설정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이 14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선영 예.

계약형의 경우에는 감독체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수익률이 다소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금형은 운용 성과를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수탁법인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과 관련된 145페이지와 147페이지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수익률 향상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사항이 있고요.

147페이지 내용이 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단 세 번째 네모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통합해서 운용할 경우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그 결과를 공유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에 논의하는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즉 설명을 해 가지고 이 부분 답변 취지가 조금 불분명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도입 취지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간

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기금형 부분도 선택지를 높이는 측면에서 지금 있는 기존의 계약형 속에서의 DB, DC 외에 기금을 별도 설립하고 그 기금을 수탁법인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운용을 함으로써 좀 전문성을 높여서 결국은 운용 성과를 높여 보자 하는 측면에서 기금형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1개 회사가 기금형을 제도를 도입해서 설계할 수도 있고 또는 기금운용 수탁법인이 기업을 넘어서서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수탁법인 지정을 받으면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다 위탁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체제로서 수탁법인이 직접 자산운용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전문위원과 정부 쪽 의견을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즉 뒷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측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 지금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예전에 1차 검토는 했는데 최근에 도입을 전제로 해서 본격적인 준비나 검토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중퇴기금은 선택지의 하나라서 복지공단이 중퇴기금을 통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준다 하는 거고 기금형 제도는 기본적인 제도로써 기금형을 하나의 모든 사용자들한테 제시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장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기금형 자체가 법인이 굉장히 유능하거나 하면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아까 임이자 간사님께서 중퇴기금에 생각하고 제기하셨던 그 이슈가 사실은 이 기금형이 걸리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형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로 또다시 맡겨야 되고 그쪽이 운용해야 되니까 이게 오히려 한 단계 더 만들면서 일종의 판매수수료, 운용수수료만 중간에서 떼어 가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이게 오히려 아까 얘기하신 게 적절한 내용이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중퇴기금은 완전히 그게 해징된 거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행 규범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철민 위원 이걸 도입한 기업단에서는 이걸로 들어가서 오히려 한 단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잘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걸 좀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형……

○김웅 위원 이게 지금 계약형, 기금형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거든요, 한정애 의원안에서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웅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이 기금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계 쪽에서도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수익률을 더 높인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잘못하다가 이것 손실 나 버리면 아시잖아요, 지금 퇴직연금 손실 나면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은 진짜 그야말로 보너스 개념이 아니고 자기 임금 개념인 건데 그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자본시장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그 정도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만한 모델해저드가 없는가 그 부분도 의문이 되는 것이고, 괜히 중간에 수수료만 더 떼어 내고 근로자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시키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지금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사실 실물경제가 안 좋지만 엄청나게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는 높이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면들도 같이 고려를 해 보면 이것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알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른바 가짜뉴스 같은 것도 나오기가 너무 쉬운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나 검토가 지금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다고 그러는 것 같고 우려도 많은 것 같고 이런 데……

장철민 위원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장차 이쪽으로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의견도 있고 또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어서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련된 한정애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73쪽 11·12항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7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호영 의원님 안과 김병욱 의원안이 있는데 두 안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호영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자산운용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내용이 개정안 취지, 제도 변화 개요 그리고 논의 사항, 관계부처 의견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이 219조 정도 되는데 그 수익률이 1.7% 정도로 상당히 낮은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일임계약을 통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및 퇴직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보시면 가입자에 있어서 지금 DC형의 경우에는 약 310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고 DB형의 경우에는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도 변화 개요에 있어서 DC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DC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그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신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마련한 투자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개정에 따른 업무의 프로세스는 17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한 연금상품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 외에 펀드상품이나 개인맞춤형 투자상품이 포함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범주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이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다음 두 번째 단계로서 근로자가 DC가입일 또는 기존 상품의 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4주가 경과할 때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그 부분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이 된다는 것을 연금사업자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통지를 받고 나서도 근로자가 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자료 179페이지, 확정급여형에 있어서의 투자일임계약 부분인데요. 현행 박스를 보시면 사용자가 직접 운용관리기관에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하는 형태로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개정된 내용에서는 사용자가 자산운용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서 자산운용기관이 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음은 자료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에 논의사항과 관계부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퇴직금이 후불임금과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퇴직금의 안정적인 지급 보장을 선호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선호와 이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고려할 필

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한국경총 등에서는 투자손실 발생 시에 근로자·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 간의 분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확정급여형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자산운용기관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법상 사용자의 투자책임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DB설정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는 데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일임계약을 허용할 때 이때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와 일임업자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은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사용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일임업자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는 자본시장법의 투자일임업자보다 그 범위를 넓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서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를 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앞서 179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와 자산운용기관, 운용관리기관이 각각의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겸업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상의 견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1페이지,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합리적 자산운용이 어려운 노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하위법령 위임의 형식이나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제도 도입 내용에는 공감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보고의무나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등 별도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차라리 내가 저걸 해 줄게. 중소기업연금기금 도입하는 것을 내가 찬성을 할게. 위원장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차라리.

○소위원장 안호영 임이자 간사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웃음소리)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걸 아니라는 거지. 이걸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소위원장 안호영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 측 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 설명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의견이 많지.

○김웅 위원 우리가 법안소위 하면서 과연 이렇게 논의사항 많이 나온 법안이 있었어요? 이것 당장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 보셨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당이 주도적으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은 퇴직연금을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저는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사에 벌써 이런 시각이 있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 참 난감한 문제 같아요.

○장철민 위원 그게 우려가 되면 사실은 이 시행시기를 뉴딜펀드 끝나는 이후로 미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 어쨌든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고 준비하고 운용하고 하려면 뉴딜펀드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뉴딜펀드에, 이렇게 보는 건 진짜로 큰 오해가 있다……

○이수진(비) 위원 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후불임금 성격도 강하고 다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노동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디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 관련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노동계의 의견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게 어차피 DB가 아니고 DC이기 때문에 자산운용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에 자산운용을 맡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래요. 노동계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시장이 좀 더 합리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식 및 채권 등으로 구성된 소위 재무적 수

익률을 객관적으로 예상하고 초과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자산운용을 유도해야 된다. 어차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나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이 아니고서야 더 크게 게임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디폴트 옵션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노동계에서 제가 의견을 받았어요.

○윤미향 위원 결국은 찬성한다라는 얘기에요?

○이수진(비) 위원 저도 찬성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게 DB가 아니라 DC다, 이걸 어차피 노동자가 선택하는 문제다, DB로 할 것인지 DC로 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했고 DC 선택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펀딩을 하든 이런 것들을 선택할 근로자들의 자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바탕에 그런 게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위험하다는 것은 좀 덜하네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이자 위원 노동계 어느 쪽에다 말했는지 물어보고 싶어. 어느 쪽하고 했는지, 금융 쪽하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제조업 노동자들하고 얘기한 건지.

○박대수 위원 노동계 어느 쪽에서 그런 얘기해요? 업종이 다양하잖아.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나.

○이수진(비) 위원 아니, 총연맹이랑 얘기했습니다.

○김웅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가습기살균제가 사회적 참사면……

○이수진(비) 위원 진작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지요.

○김웅 위원 이것 경제적 참사가 날 수도 있어요.

○소위원장 안호영 장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DB든 DC든 DC 안에서 DC를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든 노동자가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내 퇴직연금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무조건 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DC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안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것을 노사가 사전에 지정해

놓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사실은 DC형 디폴트 옵션에 가장 가까운 건 TDF지요. 타깃 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퇴직하는 게 2050년이라고 하면 2050년에 포커스가 된 펀드를 운용해서, 지금부터 한 30년이네요. 30년 동안 운용했을 때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뭐냐라고 구성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 디폴트값으로 삼아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 퇴직금이 한 3억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3억을 오늘부터 30년 이후에 찾는데 그냥 예금에 기본으로 넣어 놓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나.

○이수진(비) 위원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장철민 위원 물론 있지요. 그런 분은 DB에 넣거나 DC의 가장 안정지향적인 것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1년 후에 내가 퇴직을 해. 그러면 위험상품에 넣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20년, 30년, 긴 기간에서 내가 퇴직금을 그 시기부터 수령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나라 지수에 연동을 하든 전체 자본시장의 변화에 연동을 하든 뭔가 할 수가 있는 것을 기본으로 삼자라는 건데……

저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물론 예금이자로 1%, 2% 줄 수는 있겠지만 물가 기대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 중에 물가를 반영하는 국채가 팁스(TIPS)인가요? 뭔가요? 물가국채가 지금 -1%입니다, 제가 방금 확인을 해 봤더니. 원리금 보장상품에 넣어 놓으면 모든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이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모든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아냐고.

○장철민 위원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본은 모든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그냥 손해가 나고 있는 게 디폴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폴트를 조정하자는 거거든요.

○윤미향 위원 그러니까 가입자 보호 방안이라든가……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금을 보장

한다라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게 가만히 놔두면 그게 지수든 뭐든 자본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나아가면서 사실은 기본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리금 보장이라는 것으로 계속 위험에 대한 인식을 키우게 하면서 사실은 근로자들이 받아야만 하는 자기의 화폐가치보다 못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대실질금리가 마이너스대는 아주 명확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게 엄청나게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실제로는 손해가 나는 곳으로 밀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DC를 운용할 때 디폴트값이라는 것을 사전에 노사가 협의해서 지정하자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일종의 TDF방식, 타깃 데이트로 해서 내가 10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거다, 20년 남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디폴트값을 설정하게끔 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지정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저는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단, 단기에 일이 년 사이에서의 수익률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DC에서 디폴트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약간 논의를 더 해서 예를 들면 5년 이하나 10년 이하는 빼도 돼요. 거기에는 디폴트를 하지 말자……

○윤미향 위원 취소할 수도 있고……

○장철민 위원 사전지정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5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전지정을 할 때 원리금을 넣자라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리금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이 년 사이의 리스크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계속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을 실제로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 묶어 놓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임이자 위원 더 고민하자고.

○장철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전지정제도에 대해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요인을 두더라도. 예를 들면 진짜로……

○김웅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자동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는 보장이 있어요?

○**장철민 위원** 보장은 없지만 TDF로……

○**김웅 위원** 보장이 없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장철민 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후에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50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잖아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라가 30년 후에 엄청나게 어려워졌는데 기업들이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 있으면 오히려 그때 기업들에게는 더 큰 압박으로 옵니다, 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실물경제가 발전을 하고 실물경제에 따라서 자본시장에서의 수익률이 결정이 될 텐데 최소한 그것에 연동하거나 그것보다 나은 수익률 방식으로 나아가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실물경제 상황과 국민들한테, 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규모가 오히려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30년 후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요. 그때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사실 전체적인 실물경제가 안 좋아져 있는데 그때 오히려 확정적으로 이 과중한 퇴직금 부담을 얻게 된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서 이것과 연동해 가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게 장기라고 한다면 반드시 의미가 있는 제도다.

○**소위원장 안호영** 잠깐만요.

○**윤미향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안호영**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모이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법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29번 항이 제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순서로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직장 내 괴롭힘, 기간제근로자 구제 이런 기준법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6시까지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든다 하시면서 보좌관들

도 존중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존중해 주시고, 6시에……

직장 내 괴롭힘 몇 번이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몇 권에 있는 거지요? 1권에 242쪽이요?

○**윤미향 위원** 예, 242쪽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것 양이 되게 많네,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쟁점 일부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의 진행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좀 했다가 6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안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말씀이 계셨는데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정에 의원님이 제안했던 부분하고 또 제가 디폴트 옵션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장님, 확인차……

○**소위원장 안호영** 예,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의무화와 관련 없는 몇 가지 개정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퇴기금을 하신다면 그 규정 개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개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의결해 주시면……

○**임이자 위원** 의무화하고 난 뒤에?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니요, 아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의무화와 관련 없는 규정들을 ‘이것은 오케이, 오케이’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논의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DB형

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그런 것들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차관님, 왜 걱정이 많으세요? 다 챙겼다니까, 위원장이.

(웃음소리)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죄송합니다. 제가 주재님은 짓을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300인 이상은 운용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그 말씀 아까 통과시켰잖아.

○소위원장 안호영 잠깐만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의무화 관련된 부분은 보류하기로 했고 그것과 관계없는 부분은 우리가 의의 없는 것으로하기로 했는데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이 부분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어떻게 의견이 있었지요?

○윤준병 위원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이것은 보류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의결은 이따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법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된 부분, 임이자 의원님 발의하신 67번, 강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68번 법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 신분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과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마다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후 정부에서 협의한 내용을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112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종사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112페이지 오른쪽 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임이자 의원님이 내신 안에서 적용범위 내용을 자구 수정한 부분입니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재보험의 세부 적용에 있어서 그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입법례를 참조하여 조문 순서와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오른쪽 부분입니다. 보험료 산정·징수 등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제5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116페이지와 1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19페이지 내용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부가 보험급여 중에서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면 현행법에 따른 최저임금보상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연구원에게 전일제 노동과 동일한 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할 때 보다 높은 급여가 지급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로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 119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강은미 의원님께서 201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의 시행일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각 대학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신 소급 적용 문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례도 없고 보험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북대 학생의 케이스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것을 법에 담아서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게 저희 의견입니다.

다른 부분은 간단하게 제도 개요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교육부·과기부하고 협의했는데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 실제로 참여 횟수가 높은 대학원생을 표현할 때 지금 수정의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보통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보수를 책정하고 여기에 교육서비스 보험료를 곱해 가지고 보험료를 거두게 되면 한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보험급여나 요양급여는 원칙대로 다 해 주고 다만 휴업급여는 이분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보상기준 200만 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 제외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보수 수준에 맞추어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유족급여나 장애급여는 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고 조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안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북대 학생 문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별도의 지원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경북대에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게 저희들이 들은 정보의 전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혹시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정부 측 의견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징수법도 관련해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2권의 147쪽 보험료징수법 부분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앞서 논의하신 학생연구원

관련 사항으로 보험료 산정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 14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이 보수액에 대해서 모든 금품, 고시 금액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업무성격 고려 등 다양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참조해서 보수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보수액을 고시하여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연구원의 실보수 파악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보험료율은 학생연구원의 해당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연구원은 전문·보건·교육·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료율이 0.7%입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자료 150페이지와 151페이지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시행시기 내년 1월로 하는 부칙 조항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소위원장 안호영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2·73·74번 해서 산재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2권 자료 124페이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원청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에 개별실적요율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료 125페이지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외주화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 할인 혜택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청과 하청의 책임소재에 따라서 개별실적요율의 반영비율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으로 하위법령에서 재해 발생의 책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수급인도 하도급 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급인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그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개별실적요율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산재 발생·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안법 제61조는 사업주에 대한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인데 이 부분은 산재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다고 보아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에 대해서는 134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앞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책임소제에 따라서 원청의 법 위반으로 인하여 명백한 경우에는 원청에서 100%, 원·하청이 다 법 위반한 경우에는 원·하청 각각 50% 이런 취지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 취지로 ‘책임소제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136페이지 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15조제4항의 내용은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 사망 수가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의원님 개정안대로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할 내용은 산재사고 사망자 수 그다음에 은폐사건 수나 미보고사건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 다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산재 할인폭을 더 많이 축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임이자 위원 어제 청문회 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윤준병 위원 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138페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주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도 전문위원실 의견처럼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신중 검토 의견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이게 장철민 위원님이 낸 안인가요?

이 부분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장철민 위원 어떤 케이스에 이중규제가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은폐·미보고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받는다면 은폐·미보고에 대해서 이미 벌칙 규정이 별도로 있고 또 은폐·미보고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으면, 은폐·미보고 하는 게 사회에 발각이 되면 할인폭도 축소가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은폐·미보고에 대한 제재 규정과 할인폭 축소 등의 경제적 제재에 더해 부과금까지 가해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보류했다가 다음에 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14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위반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확정판결일 경우에 시간상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도 약해지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의 부담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처분일 또는 보통 저희들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검찰에 일정한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송치일자를 기준으로 저희들은 일단 개별실적요율을 정하고 만약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확정판결 결과가 저희들 입장하고 상치될 경우에는 사후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입니다.

○김웅 위원 동의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 부분은 동의해 주시면 전문위원실하고 문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구체적인 문안은 정부하고 협의를 더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 회의 끝나고 바로……

○김웅 위원 아니,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 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냥 현행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확정일로 보험요율을 정한다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죄송합니다.

시행령에 위임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 부분은 그럼 일단 보류하는 걸로……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제가 내용만 보고서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이요. 87, 88, 89, 90 법안.

○전문위원 최선영 외국인근로자법 들어가기 전

에 부칙 부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부칙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선영 145페이지 부분에서 시행일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다음 법안. 87, 88, 89, 90번이요.

○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권 19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로 네 가지 항목입니다.

특례고용허가제 업종에 광업을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발생 시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 등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하려는 부분으로 광업 분야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료 197페이지 감염병 등 발생 시 취업활동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비교 박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8조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18조의2에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별로 추가하는 기간을 어디로 할 것인지 각 개정안에 차이가 있는데요. 임이자 의원, 홍석준 의원님 안은 3년 만료+1년, 3년 2년 1년 이렇게 두 부분에 다 1년을 연장하는 부분이고, 백혜련 의원님 안은 3년+2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해서 1년을 추가하는 부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장 사유에 있어서도 각 개정안이 차이가 있는데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 임이자 의원님 안이고, 홍석준 의원님 안에서는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심각경보 발령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도 각 안에 차이가 있고 1년

의 범위, 1년 미만의 범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차이가 있고, 부칙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논의하실 대상은 연장 대상을 3년 만료된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부로부터 의견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3년+2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해서 1년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개정안 비교표에서 고용노동부 의견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장하는 대상 기간은 3년 만료자와 재고용된 합계 4년 10개월, 5년 만료자 모두 필요하다, 각각의 대상이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연장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 법의 시행은 즉시 시행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금 현재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으로 하고, 그럴 경우에 대통령령 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건을 의결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연장사유는 ‘출입국 곤란’하고 그다음에 ‘인력부족 문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고.

연장기간은 1년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 부칙조항 마지막에 있는데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 재난상황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비한 대안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위원 저는 고용노동부 의견에 다 동의하는데, 연장사유 중에 ‘인력부족 심각’은 산업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법무부 의견대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곤란만 있어도 요건이 되지 않나,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크리티컬(critical) 문

제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김웅 위원님 안대로 수용을 해서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수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문안 부분에 전문위원하고 협의할 부분들은, 자구는 또 논의를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논의를 잠깐 넘어갔는데요, 근로기준법 관련해 가지고 29번 법안인데요. 직장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1권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전문위원 최선영 1권 227페이지 내용입니다.

1권의 227페이지부터 근로기준법이 시작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확대와 제재조치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개정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정안별로 ‘제3자’의 범위가 ‘소유자, 임차인, 도급인, 직장내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등으로 서로 상이하고, 요건에 있어서는 법률상 사실상의 지위 이용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사용자의 관계를 벗어난 부분이므로 산안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고용노동부 의견.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직장 밖 제3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규정은 산업안전법에 고객응대근로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법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을 확대해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보다는 제2권의 157페이지에 보면 산안법 개정안 중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부터 근로자 보호'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송옥주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제시한 안이 있는데요.

윤미향 의원님은 특고까지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

송옥주 의원님 안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행 규정은 자료 162페이지를 보시면 2항에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강구했던 것은 여기에서 '고객응대근로자'를 빼고 그냥 '근로자'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송옥주 의원님 안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는 중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그러면 제3자가 고객으로 한정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감안할 때 저희가 새롭게 수정안을 여기서 그냥 구두로 제시를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 설명이 괜찮은 것 같으면 이 문안은 아까 오전에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구두로는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문안 정리해서 시행을 하면 근기법 일부 하고 산안법 일부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기법 조항은 아직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3자는 산안법으로 보완이……

○소위원장 안호영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가 괴롭힘을 했을 때 그때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부 측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웅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인 문안은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법안들은 다루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님, 괴롭힘 하면서 한 가지 규정이 더 있습니다. 1권에 257페이지,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한꺼번에 하시면 그게 윤미향 의원님 당초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벌칙을 내는 안 그다음에 과태료를 내는 안 등 여러 가지 개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야……

○소위원장 안호영 그 부분 의견 주세요.

○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57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행위유형에 직접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현행에는 제재사항들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별로 벌칙을 부과하자는 부분,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칙 같은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반영하지 않고 과태료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성희롱 관련된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사용자에게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부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후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사 후 행위자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은 조사 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인데요. 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근기법에는 없어서 이를 신설하고 동일하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재 부분에서 수정의견은 사용자에게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친족인 부분에 대해

서도 제재대상에 추가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해서 사용자가 주체가 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직원이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조치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준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성희롱 관련 조사를 할 때 지득한 비밀을 대외적으로 누설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대외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게 함으로써 2차적인 피해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고요. 이걸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수진 의원님 안에 있는……

○이수진(비) 위원 제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설명을 꼭 들었는데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수진(비) 위원 잠시만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게 직장이나 사무실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걸 봤을 때 원청의 갑질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 고객 갑질로 인해서 피해받는 종사자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도급인이나 고객이나 또 사용자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 포함해서 이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함돼서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 갖고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이수진(비) 위원 지금 산안법에서 적용을 하시겠다고 노동부에서 하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안법에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걸로 가고요. 괴롭힘 행위의 주체를 확대하는 부분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로 해서 이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넣으면 친족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사용자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이수진(비) 위원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서로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법안 처리하면서 논의를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 논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것 넘어가기 전에 이 책자에서 266페이지만 한번 봐 주십시오.

266페이지,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옥주 의원님 안 보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조사방법에 대해서 명시해 주는 게 사업주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시지요. 다른 이견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선영 마치기 전에 근기법에서 286페이지 부칙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외고법으로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 부분 다른 이견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안.

○전문위원 최선영 다시 외고법 논의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료 2권의 20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입국 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하고 특례요건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현재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근로자는 3개월 후에 다시 재입국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1개월로 단축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부분은 200페이지 박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잔여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면서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성이 없어서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조금 구체화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 개정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제1호 나뉘고 제1호 라목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고시 기준을 충족할 때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등'으로 구체화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20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교육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 22조의3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노동 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고용허가서를 받은 사용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부가 추산한 결과에 의하면 그 대상이 4만 5000여 개 정도 되고 현재 교육을 실시할 만한 예산 등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설명을 듣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고용부가 제시한 의견은 법령의 규율

형식에 있어서 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서는 교육받을 내용을 각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대상, 내용, 시간 등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기초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성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보시면 22조의3이 사용자 교육을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가서 보시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또 사용자 교육에 대한 경과조치를 뒤서 6개월이 경과한 사용자들은 이 법 시행일부터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분들이 법이 시행되면 6개월 이내에 전부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 4만 5000명분의 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공포 후 최초 고용허가사업장 3000개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없이 저희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성희 예, 그리고 경과조치 없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현실적인 필요성 얘기 들으셨는데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런 의견대로 하시지요.

전문위원, 더 할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선영 다른 사항은 없고 206페이지 부칙 부분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정부 측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다루는 법안들은 그렇게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합의된 법안들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21항, 제27항, 제30항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제68항, 제69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5항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부터 90항까지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장님, 저희 직원이 괴롭힘 관련한 산안법 규정이 지금 빠졌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선영** 산안법 규정이 빠졌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보호조치 부분, 산업안전법……

○**전문위원 최선영** 아까 설명만 하시고 구체적인 심사를 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여러 의원님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저희들은 대안으로 송옥주 의원님 산안법 개정안을 문구를 수정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158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지금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내용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 안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안법.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아까 제76항부터 84항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의사일정 제78항, 79항, 81항, 84항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근기법 제29항, 제31항도 함께 대안 반영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용노동소위 회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사노동자법이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되지 않아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3월에 가사법 공청회 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법안소위에서 가사법을 심도 깊게 심의를 해서 가장 취약한 가사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앞에서 지금 추운 날씨에 천막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데 우리가 3월에 꼭 이 문제를 잘 책임 있게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농성장에 가서 건강이 상하지 않게끔 빠르게 접으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노동자들이 따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환노위가 어렵고 취약계층의 노동자들, 특히 가사노동자를 위해서 마음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요 존경하는 임이자 야당 간사님하고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웅	박	대	수	안	호	영	윤	미	향
윤	준	병	이수진(비)		임	이	자	장	철	민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최	선	영
---	---	---	---	---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	관	박	화	진
기획조정실장		박	성	희
통합고용정책국장		황	보	국
직업능력정책국장		송	홍	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영	만
정책기획관		선	우	정
국제협력관		노	길	준
노동시장정책관		김	유	진
노사협력정책관		류	경	희
근로기준정책관		김	대	환